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21. . .<br>(제 회) |      |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 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 | 국무위원 ○○○<br>(○○○○○○장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21. . . 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 지자체장이 직접 보상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## 3. 주요내용

가. 질병청장이 예방접종피해보상 업무의 일부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(영 제32조제4항 신설)

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 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 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##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2항·제3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2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~ ③ (생략)<br><u>&lt;신설&gt;</u> | 제32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br><u>④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2항·제3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</u> |
| ④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| (043) 719 - 7132 |